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3일,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희 의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관심 증가, 규제강화 등으로 식품 수출 시 인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함.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제2호).

아울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제3호).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이정은 수석전문위원)

① 현재 「식품산업진흥법」이 ‘해외 식품인증 관련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②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이 포

괄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은 현행 법령으로도 수행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보임.

또한,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하려는 식품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사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